

	계절학기운영규정	규정번호	3-4-6
		제정일자	1997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강대상) 수강대상자는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규학기중 미취득 과목이 있는 자
2. 복학생중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점 미이수자
3.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자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(개설기준) ① 계절학기는 졸업학년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2주 이내에 개설한다.

② 수업은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강의개설은 동일과목의 수강신청자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수교과목 및 자격증 취득 교과목인 경우에는 10명 미만이라도 개설 할 수 있다.

④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수강신청) ①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학과에 수강신청을 하며,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확인 후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.

② 계절학기 당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학점까지로 한다.

③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일반수업을 중복 수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수강등록) ①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이 규정 제2조 제2호, 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.

제6조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

② 제2조 제1호에 대한 성적은 최고 B+까지이며,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최고 A+까지 인정한다.

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은 당해 학년도의 정규학기(1, 2학기) 성적 평점평균 계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. 다만, 진급 당해 학년도의 1년간 성적 평점평균 계산에 합산한다.

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시 반영하지 않는다.

제7조(강사료)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